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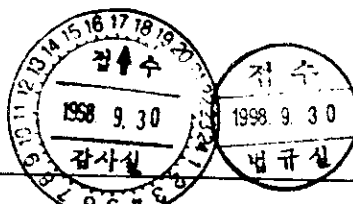
제1차 금융개혁안

문서번호	정금 5011 - 514			공시		
처리기한	1998. 9.	보존기간	부속제호 부속제 총 제 영구 12 389 30			
기안	1998. 9.	영구				
발신	1998. 9. 30.					
과장 부장				17 28 22		
기안자	김 봉 기	합	(법규실) 기획부장 12	전결근거	직무권한분류표 제1장 제1항 제4호	
소속	금융 기획 과	의				
직위	행원 전화 4040					

수신
참조
제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무역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붙임1>과 같이 검토하고 <붙임2>와 같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무역금융지원 확대(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

한국은행 행내 021-10('89.11.19) ()

(결재서식)

업무	필요	공
연혁		
기록	불요	람

I. 檢討背景

-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무역금융이 지원되지 않았던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용역수출, 일부 농수산물 수출 등을 용자대상에 포함
- 또한 90일로 제한되어 있던 용자기간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 수출업체들이 무역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이용절차를 간소화

II. 支援擴大方案

1. 融資對象 擴大

-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
 -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실적이 미미하여 동 수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용역수출이 증대되면서 동 수출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증대

- 따라서 용역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용역수출시 주로 이용하는 수출계약서로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요 용역 수출실적(97년중)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밤 송	영화
100.0	81.4	12.7	8.8

(백만달러)

- * 용역수출은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주로 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화의 경우 제작전에 Demo Tape(견본필름) 등을 근거로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사전매매계약서)이 이루어지고 국내 금융기관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완성된 Tape의 인도와 함께 해외구매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융자금을 상환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융자대상품목 제한 폐지

-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 수출품목이 소수에 불과하여 무역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품목별로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용

- 현재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융자대상품목은 밤, 송이버섯, 배 등 22개 품목임

무역금융 융자대상 주요 농수산물 수출실적(97년중)

밤	송이버섯	배	사과
88.4	30.1	9.1	6.4

(백만달러)

○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출품목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품목별 요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는 무역금융을 기동성 있게 지원하는데 미흡

○ 따라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품목제한 없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자대상품목에 대한 제한을 폐지

무역금융 용자대상 제외 주요 농수산물 수출실적(97년중)

(백만달러)

김 치	홍 사	채소종자	표고버섯
39.7	35.4	12.8	8.3

— 해외 건설·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용역수출에 대한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재화수출의 경우 비계열대기업(1~30대 계열기업 제외)도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용역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비계열대기업을 포함

* 해외 건설·용역수출금융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융과는 달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을 국내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금융으로 해외업체와 체결한 건설공사 및 용역공급계약서 등의 금액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지원

2. 融資期間 自律化

- 현재 무역금융 융자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해외 현지공장에 국산원자재를 공급하여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조달, 수송, 생산 및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함으로써
 - 수출업체가 Nego자금으로 무역금융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자금부담이 가중
- 또한 생산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전대출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융자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90일 마다 융자금 상환, 융자한도 재산정 및 재융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이용상 애로가 있음
- 따라서 외국환은행이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와 함께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시 융자기간 제한(60일 이내)도 폐지

3. 利用節次 簡素化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을 수집자금*과 비축자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통합

-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혜업체도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결재시 일반수출입금융으로 대체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

- * 수출용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용자기간 90일 이내)

- ** 수출용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어민이나 수집자로부터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수집자금보다 용자기간이 장기임(용자기간 90~240일 이내)

— 수출신용장 등의 요건 제한 완화

- 선적서류가 필요없는 용역수출이 용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선적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수출 신용장(貨換신용장*) 등의 요건 제한을 완화하여 無貨換신용장*으로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화환신용장은 수출을 완료한 후 수출환어음에 선적서류(B/L)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Nego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신용장이고 무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 없이 수출환어음만을 발행하여 Nego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신용장임

— 매월 또는 매90일로 되어 있던 용자한도 산정주기 제한을 폐지

- 현재 무역금융의 용자한도는 매월 또는 매90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자기간 자율화 취지에 맞추어 산정주기 제한을 폐지

— 용자기간 연장시 신규자금 취급제한 폐지

- 현재는 용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해업체에 대해서는 연장한 용자금의 완제시까지 무역금융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Ⅲ. 期待效果

-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용역 수출과 모든 농수산물 수출을 무역금융 용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이 확대되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무역금융 용자기간과 용자한도 산정주기를 자율화하고 용자기간 연장시에도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

Ⅳ. 要 措置事項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총재결재)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 개정 (부장결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현	개정(안)	비고
제 1 조 ~ 제 6 조 (생 략) 제 7 조(용자대상)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만, 「은행감독규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한다)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 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이하 “적색거래처”라 한다)는 제외한다. 1.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 및 인수인도(D/A)조건 수출계약서(이하 “<u>수출계약서</u>”라 한다) 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계약서(이하 “<u>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u>”라 한다)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생 략) 가~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은 제1항 제3호의 수출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1. <u>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대용수출이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u> 2. <u>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u>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으로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라 그 판매대전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분 4. <u>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u>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제 1 조 ~ 제 6 조 (현행과 같음) 제 7 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이하 “<u>수출계약서</u>”라 한다) 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계약서(이하 “<u>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u>”라 한다)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고자 하는 자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으로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라 그 판매대전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분은 제1항 제3호의 수출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 용자대상에 용역수출을 포함하고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를 용자대상증빙에 포함 - 용자대상증빙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현		
제 8 조(용자대상증빙의 요건) 제7조에서 정하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신용장 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일 것 다만, 쌀, 선어, 김 및 냉동수산물 수출을 위한 무화환 신용장, 운송주선업자발행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 첨부조건의 신용장, 국내보세창고입고증명서 첨부조건의 신용장 및 최종 인도장소가 국내인 무화환신용장의 경우에는 화환신용장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나 ~ 라. (생략) 마.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전액 선수금조건의 수출이 아닐 것 바. (생략) 2. 선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가. (생략) 나. 수출대금 회수방식은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를 추심하는 방식이거나 수출대금의 회수와 동시에 용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기타 방식에 의하여 결제되는 것일 것 다. 단순송금방식 또는 증장기연불수출에 의한 수출계약서가 아닐 것 라. (생략) 3. (생략) 제 9 조 ~ 제 12 조 (생략)	제 8 조(용자대상증빙의 요건) 제7조에서 정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신용장 가.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삭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아닐 것 바. (현행과 같음) 2.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 증장기연불수출에 의한 수출계약서가 아닐 것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 9 조 ~ 제 12 조 (현행과 같음)	- 용자대상증빙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 용자대상 확대에 따른 수출신용장의 요건 완화 - 수출신용장의 요건 완화 - 용자대상증빙 확대에 따른 조문정비 - 용자대상증빙 확대에 따른 대금회수방식 제한 폐지 - 용자대상 확대에 따른 수출계약서 등의 요건 완화 및 목제상 - 목제상

현행	제정(안)	비고
제 13 조(용자한도의 산정) ①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금별 용자한도는 <u>매월</u>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포괄금융 용자한도는 <u>매월</u>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u>다만, 실적기준 생산자금 또는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용자한도는 매90일(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 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단위로 산정한다.</u> ②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 <u>자금부장이</u>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을 이관받아 당해 업체의 용자한도 산정시 동 수출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의존율은 한국은행 <u>자금부장이</u>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제 14 조 ~ 제 15 조 (생략) 제 16 조(용자기간) ① <u>용자기간은 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 180일, 실적기준금융의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u> <u>다만,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가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u> ② <u>생산자금 및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금융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u> <u>다만,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경우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수입물품을 영수할 때에는 동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u>	제 13 조(용자한도의 산정) ①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금별 용자한도는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포괄금융 용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삭제) ②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 <u>정책기획부장이</u>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을 이관받아 당해 업체의 용자한도 산정시 동 수출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의존율은 한국은행 <u>정책기획부장이</u>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제 14 조 ~ 제 15 조 (현행과 같음) 제 16 조(용자기간) 용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삭제)	- 용자한도 산정주기 제한 폐지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용자기간 자율화 및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에 대한 용자기간 제한 폐지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③ 신용장기준금융의 자금별 용자기간 만료일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하며,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용자기간 만료일은 동 용자한도의 유효기간(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 해당 수출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 용자취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④ 용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용자취급의 제한) ①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혜업체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용자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을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용자한도의 산정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용자기간을 연장취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용자기간내에 동 용자금과 관련하여 입금된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연장 취급한 용자금이 완제될 때까지 신규의 생산자금(실적기준 생산자금 포함) 및 포괄금융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생 략) 제 18 조(용자취급은행의 제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생 략)	(삭 제) (삭 제) 제 17 조(용자취급의 제한) ① (삭 제) ② (삭 제) (현행과 같음) 제 18 조(용자취급은행의 제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현행과 같음)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용자취급 제한 폐지 - 용자기간 연장시의 제한 폐지 - 조문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	---	--

제 20 조(용자한도) ① (생 략)

②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는 매 90일 단위로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과거 외화입금실적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생 략)

제 21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금액에 평균기준환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1 ~ 2 (생 략)

제 22 조(용자기간) ①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에 대한 용자기간은 당해 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하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80일, 기타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산자금 및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금융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경우 화물선 취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수입물품을 영수할 때에는 동 화물선취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의 용자기간 만료일은 동 용자한도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④ 용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3 조(준용규정) 제9조 제1항, 제15조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건설·용역수출금융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21 조(용자금액) ① (생 략)

②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는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과거 외화입금실적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21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대상금액에 평균기준환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 22 조(용자기간) 용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생 략)

(생 략)

(생 략)

제 23 조(준용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은 건설·용역수출금융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용자한도 산정주기 제한 폐지

- 건설용역수출금융 용자대상에 비계열대기업 포함

- 용자기간 자율화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 용자기간 자율화에 따른 조문정비

- 조문정비

현	비	요																	
제 24 조(용자대상) 이 장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대출은 수출용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와 이를 수출품 또는 수출품의 원료로 비축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자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는 수출업자(이하 "비축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만,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는 제외한다. 제 25 조(용자금의 구분)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은 자금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취급한다. 1. 수집자가 용자대상품목을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수집자금"이라 한다) 2. 비축자가 용자대상품목을 비축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비축자금"이라 한다) 제 26 조(용자대상품목 및 용자기간)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대출의 용자대상품목과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자 금 별</th><th>용 자 대 상 품 목</th><th>용자기간</th></tr> </thead> <tbody> <tr> <td>수집자금</td><td>김, 우뚝가사리, 갈저, 오징어, 뽕</td><td>90일 이내</td></tr> <tr> <td rowspan="5">비축자금</td><td>참 건</td><td>180일 이내</td></tr> <tr> <td>추 건</td><td>240일 이내</td></tr> <tr> <td>미곡제조용 잡곡</td><td>210일 이내</td></tr> <tr> <td>부침사, 갈저, 우뚝가사리, 통조림용 굴, 박새(마삼 포함), 통조림용 쌀, 떡갈이, 망개일, 사과, 배, 냉동용 딸기</td><td>180일 이내</td></tr> <tr> <td>김, 양송이, 송이, 오징어, 뽕, 뽕장어, 건머리, 염장미역</td><td>90일 이내</td></tr> </tbody> </table> 주 : 1) 부침사는 누에씨 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한함 제 27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자 금 별	용 자 대 상 품 목	용자기간	수집자금	김, 우뚝가사리, 갈저, 오징어, 뽕	90일 이내	비축자금	참 건	180일 이내	추 건	240일 이내	미곡제조용 잡곡	210일 이내	부침사, 갈저, 우뚝가사리, 통조림용 굴, 박새(마삼 포함), 통조림용 쌀, 떡갈이, 망개일, 사과, 배, 냉동용 딸기	180일 이내	김, 양송이, 송이, 오징어, 뽕, 뽕장어, 건머리, 염장미역	90일 이내	제 24 조(용자대상) 이 장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자금대출은 농수산물을 수출품 또는 수출품의 원료로 비축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수출업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만,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는 제외한다. 제 25 조 (삭 제) 제 26 조(용자기간) 용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 (삭 제) 제 27 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수출용 농수산물의 매매 또는 공급계약서 등의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용자취급은행이 정한다.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대출의 용자대상 확대 및 자금구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대출의 자금구분 폐지 - 용자기간 자율화 - 용자대상품목 제한 폐지 - 조문정비
자 금 별	용 자 대 상 품 목	용자기간																	
수집자금	김, 우뚝가사리, 갈저, 오징어, 뽕	90일 이내																	
비축자금	참 건	180일 이내																	
	추 건	240일 이내																	
	미곡제조용 잡곡	210일 이내																	
	부침사, 갈저, 우뚝가사리, 통조림용 굴, 박새(마삼 포함), 통조림용 쌀, 떡갈이, 망개일, 사과, 배, 냉동용 딸기	180일 이내																	
	김, 양송이, 송이, 오징어, 뽕, 뽕장어, 건머리, 염장미역	90일 이내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8 조 (생 략) 제 29 조(개선훈도) ① ~ ③ (생 략) ④ 원자재금융의 융자한도를 소진한 업체는 자기자금으로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자재내국신용장(이하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원자재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을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다음의 금액(소정 융자한도내 개설분 포함)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원자재내국신용장과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개설된 분은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소요 원자재 해당액 범위내 2.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 : 개설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자사제품 수출실적에 당해 업체의 평균원자재 의존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 ⑤ ~ ⑥ (생 략) ⑦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 30 조 ~ 제 33 조 (생 략) 제 34 조(융자금의 회수) ① 일반수출입금융 및 건설·용역수출금융은 소정 융자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융자대상수출, 건설공사 또는 용역공급의 대금이 입금될 때 동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 28 조 (현행과 같음) 제 29 조(개선훈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융자취급은행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 30 조 ~ 제 33 조 (현행과 같음) 제 34 조(융자금의 회수) ①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융자대상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될 때 동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융자한도 자율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내국신용장제도 폐지 - 항채상 -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한도 확대 자율화 및 항채상 - 조문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③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의 수집자금은 비축자금으로 대체 결제하여야 하며, 비축자금은 관련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일반수출입금용으로 대체 결제하여야 한다. 제 35 조 ① ~ ③ (생략) ④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외국환 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6 조(보고) 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취급상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정한다. (신설)	(삭제) 제 35 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또는 지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6 조(보고) 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정책기획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취급상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금융결제부장 또는 지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정책기획부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8. 10.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 융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간소화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시행일자 및 경과조치 명시